

새 클럽활동정지 방침

2006년 7월 국제이사회는 미납금을 체납하고 있는 클럽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새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금이 회원 1인 당 \$20 혹은 1개 클럽 당 \$1,000중 적은 금액으로, 체납기간이 150일을 경과하는 클럽은 자동적으로 클럽활동정지에 처하게 되며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최고 90일간 중지됩니다. 그리고 90일 이내 미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차타가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클럽활동정지라 함은 라이온스클럽의 차타,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활동정지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할 수 없습니다:

- (a) 봉사활동 실시.
- (b) 기금모금사업 실시.
- (c) 지구 및 복합지구 행사 혹은 연수회 등에 참석.
- (d) 클럽 외에서 투표 함.
- (e) 지구, 복합지구 및 국제임원 후보자를 추천 혹은 지명.
- (f) 월별 회원보고서 및 보고서 제출.
- (g)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을 포함하여 신생 라이온스클럽 스폰서.

활동정지클럽은 아래 사항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 (a) “ 미납금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계획 ” 을 포함, 클럽장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 (b) 체납잔고를 청산하기 위해 미납금 지불.

본 방침에 의하면 미납금을 체납하는 클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클럽이 미납금을 15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클럽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클럽이 체납금을 지불할 시 활동클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할 때 클럽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즉시 회원현황을 검토,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클럽들이 \$1,000 이상의 미납금을 90일 이상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방침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클럽들이 과중한 미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활동상태가 되어 해산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거액의 체납금으로 인해 퇴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국제회비는 국제협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의 원천입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시에 회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membershipbilling@lionsclubs.org) 로 연락해 주십시오. 모든 클럽이 월별 클럽명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곧 스탠딩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금액을 적시에 지불할 것이라 믿습니다.

회비청구 및 구좌 서비스과

300 W. 22nd Street

Oakbrook, IL 60523-8842 이메일: membershipbilling@lionsclubs.org

전화: 630-571-5466 팩스: 630-571-1687